

2017 10

가정상담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가 주관하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가 지난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 (관련내용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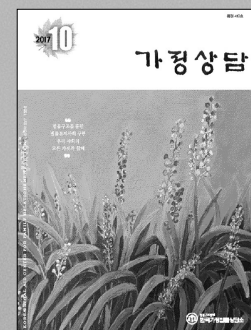


지난 9월 9일과 14일 서울 신촌과 코엑스에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을 진행하였다. (관련기사 33면)



9월 22일에는 본소 강당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재교육으로 '이정식 사장 초청-민족수난사와 함께 한 우리 가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33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8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❷
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2)
- 20 • 교육부
- 24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인터넷 상담
- 29 • 좋은 책
나이들을 배우다
- 30 • 결혼과 인생(176) 영화이야기
모나리자 스마일 _ 김용언
- 32 • 상담소 소식
- 35 • 지부 소식
- 36 • 상담통계
- 37 • 백인번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생각하며, ‘폭력의 시대’를 염려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 곳곳에서 어긋난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 안팎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과 그 후폭풍 등의 소식이 많아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인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력, 울산과 전주 등의 학교 폭력 피해자 자살 등의 소식을 보면서 그 폭력의 정도에 놀라고, 학교와 지역사회, 공권력 등이 폭력에 대처하는 자세와 과정에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지만, 어쩌면 이것도 기성세대의 비겁한 회피는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와 집단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그 집단과 사회의 성숙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의 실상을 보면 우리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청소년들에게 갈등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가르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가정과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폭력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쉽게 포기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떤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올바르게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2차, 3

차 가해를 더하는 현실을 만들어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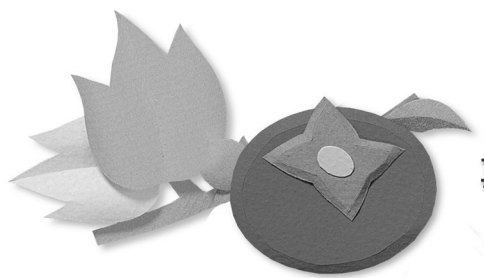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공권력의 영역에서 관리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지만 그 문제적 양상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며, 말 못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력,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트 폭력은 물론 심지어 대학과 직장에서도 이른바 ‘군기잡기’라는 명목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진다고 합니다. 군대 폭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기잡기’라는 말이 군대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쓰이는 현실은 한 세대 넘게 지속된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악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렇듯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을 그 세대의 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폭력의 총량,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무감각 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만큼 폭력물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하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어떠한 방향에서든 더 이상 논의를 뒤로 미루어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력장면이 문제가 되었던 영화도 있지만, 쉽게 접하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타인을 모욕하고 손찌검을 합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웃음과 모욕’ 모호하고 불분명하지만 이런 지점에 대해 논의하고 또 논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소년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형량을 무겁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폭력의 원인, 동기를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논의라는 것이 막연하고 실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사회, 문화, 교육 전방위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 폭력 특히 청소년 폭력의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의 가장 중요한 무엇이 되고 게임과 웹툰이 가장 쉽게 접하는 문화가 된 지금은 기성세대들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데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부처가 관료적으로 진행할 일만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나 민간단체 한 두 곳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청소년과 가족의 문제 전반을 넓고 깊게 바라보면서 총체적으로 고뇌하고 노력해야 할 중심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특 · 별 · 기 · 고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¹⁾

I. 들어가는 말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전남편이 아닌 제3자가 생부로 확인되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할 의사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²⁾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한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夫)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그 자를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출생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부(夫)의 친생자

로 추정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³⁾은, 친생추정의 주된 목적인 자의 복리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전남편의 친생자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아도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셋째, “친생추정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비송사건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등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자의 신분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즉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단한 비송사건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2017년 1월 17일 입법예고), 아래에서는 위에서 본 세 가지 점에 비추어 법무부의 개정안을 검토해 본다.

1) 김상용 교수는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2) 헌재결 2015. 4. 30, 2013헌마623.

3) 민법 제844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4)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설시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이러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래의 입법 취지에는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친자관계를 신속히 진실에 맞게 합치시키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II. 기존의 법리에 따른 해결방안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전남편이 아닌 제3자가 생부로 확인되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모가 그 자를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생부의 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모나 모의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부가 독자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법무부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도 위에서 지적한 점은 사실상 실무에서 이미 해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 즉 모가 혼인 중 또는 혼인해소 후에 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남편(또는 전 남편, 이하에서는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한다)과 자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고,⁶⁾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이 경우 모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므로, 이후에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생부가 원고로서 자의 출생신고 전에 모의 남편과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이와 동시에 원고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가 직접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한 점들이 이미 모두 해

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모가 혼인 중이나 혼인해소 후에 출산한 자에 대해서 이러한 법리가 언제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모가 친생추정을 받는 기간 중이라도 동서의 결여 등으로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이 없이도 이해관계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남편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⁷⁾고 한다. 따라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모가 출산한 자는 원칙적으로 모의 남편의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게 되지만, 모가 그 자를 포태할 수 있는 기간에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서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⁸⁾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모나 모의 남편은 물론 생부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1980년대에 확립되었는데, 그 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지면서 친생추정 여부를 판단할 때 동서의 결여라는 외관과 더불어 유전자검사 결과가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포태기간 중의 동서의 결여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해소되었고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자와 모의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최근에 선고된 대전가정법원 판결⁹⁾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자의 생부) A는 다른 남자 D와 혼인관계에 있는 B(자의 모)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2012. 11. 9. 그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B는 C의 출생 직후 가출하여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A가 그 동안 홀로 C를 양육하여 왔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¹⁰⁾ A는 C가 태어난 후

5) 호적선례 1-58(혼인 중 타남편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그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위 자 사이에 친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는 모의 출생신고로 모의 호적에 입적시켜야 할 것이다), 호적선례 5-51(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1개월만에 병남과의 사이에서 자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6) 이 경우 자를 특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주 (2015. 12. 20.생, 여)’ 또는 ‘하영○ (2014. 4. 10. 15:07 목포시 옥암동 977-2에 있는 미즈아이병원에서 출생, 남자)’, ‘김철○ (2007. 5. 1. 09:0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50 광생로 산부인과에서 체중 3.8kg으로 출생한 남아)’ 등으로 표시한다.

7) 호적선례 5-51.

8) 대판 1983. 7. 12, 82므59 전원합의체.

9) 대전가정법원 2017. 2. 16, 2016드단55628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7. 21, 2014드단310144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C와 D(모 B의 남편)를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시하였다. 「피고 C의 출생증명서상 부(父)가 원고, 모가 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피고 D와 1996. 9. 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생부 A는 C를 직접 자신의 친생자(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실관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본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모)은 전남편과 2011. 12. 19.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며, 2012. 2. 28.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그 후 자의 생부와 동거하면서 2012. 10. 22. 자를 출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전남편의 혼인관계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무렵인 2011. 12. 19. 전부터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전남편간에는 이혼신고 전부터 동서가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¹⁰⁾ 유전자검사 결과 청구인이 혼인해소 후에 낳은 자와 전남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출생신고가 되면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¹²⁾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청구인이 이러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지,¹³⁾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해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의 결정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실무상 해결방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개선입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된 법무부의 개정안은 위에서 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생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모의 신원이 불상인 경우에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었다(2015. 11. 19. 시행). 이에 따라 생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반면에 혼인외의 자라도 생부가 모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 대전가정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생부가 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나 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생부가 출생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모가 현재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89호: 부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부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844조에 의해서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11) 청구인이 자를 포태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2. 1. 경은 이미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이므로, 청구인이 전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12) 또한 생부가 원고로서 모의 전남편과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3)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출생신고와 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출생신고와 인지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14) 현재 실무상 가능한 해결방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거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제44조 제1항) 내에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II.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모가 그 자를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③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前)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854조의2 또는 제855조의2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안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제84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추정을 배제하려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남편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855조의2(허가에 따른 인지) ① 제84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추정을 배제하려는 생부(生父)는 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부(生父)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다.

법무부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비송사건절

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개정안 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개정안 제855조의2)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는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子)를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후 직접 모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자가 출생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생부도 법원에서 인지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할 수 있다.¹⁵⁾ 모가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나 생부가 인지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하는 경우나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무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은 출생신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1개월의 기간¹⁶⁾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사건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의 배제나 부자관계의 창설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판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¹⁷⁾ 결국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모의 혼인외의 자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출생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

15)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개정안 제855조의2에 따르면 인지에 의해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16)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 법무부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친생부인의 소와의 균형상 친생부인의 허가도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3항). 그리고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40조).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한다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받아 출생신고를 마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에서 제외한다면, 심판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실무제요, 가사 II, 209면), 이로써 출생신고까지의 기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절차가 1개월 내에 마무리되어 출생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야 한다(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제7조 제1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규정도 엄격하게 말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1개월이라는 출생신고기간은 상당히 이례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출생신고기간을 보면 독일 7일,¹⁸⁾ 프랑스 3일,¹⁹⁾ 일본 14일²⁰⁾ 등으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단기로 되어 있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내법(가족관계등록법)은 물론 국제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이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모가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는데, 출생신고가 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생등록제(아기가 태어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²¹⁾ 출생등록제는 아기의 출생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무부 개정안은 이러한 의미의 출생등록제와도 조화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 개정안은 자의 출생 후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과 같은

재판을 거쳐 비로소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주일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²²⁾

한편 법무부 개정안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모 또는 모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854조의2 단서). 따라서 이러한 자를 전남편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자의 신분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한 다음 생부가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것이다).

2. 생부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부가 법원에서 인지의 허가를 받아

18) 독일신분등록법 제18조.

19) 프랑스민법 제55조, 제56조.

20) 일본호적법 제49조.

21)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가족법연구 IV(2014), 164면 이하(처음 게재: 법학연구 제54권 제4호, 2013);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족법연구 제30권 3호(2016), 481면 이하;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60면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과 법률전문가의 약 80%가 출생등록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7. 7. 16. 보도 “앞으로 출생신고는 병원이 책임져라? ... 의료계 반발” 참조.

22) 정구태,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법학논총 제23집 제1호(2016), 21면에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7조의2(가정법원의 확인에 의한 친생부인) 제844조에 따라 夫의 子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夫부 間에 동거의 결여로 처가 夫의 子를 포괄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혈액형이나 유전자검사 결과 夫가 子의 父가 아님이 명백하고 夫와 子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夫나 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의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면 절차가 간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친생추정의 배제를 다루는 사건의 성격상 1개월 내에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른바 ‘사회적 친자관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1개월 내에 종료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가정법원 확인절차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개정안에서의 확인절차는 그 본질에 있어서 친생부인소송절차와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상대방이 있는 소송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사건을 비송사건, 특히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현소해,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성균관법학 제27권 제4호(2016), 85면 이하에 제시되어 있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개정안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자를 인지할 수 있다(개정안 제855조의2 제1항).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 개정안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 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²³⁾ 따라서 이러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갖는다(법무부 개정안이 이러한 자를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 우리 민법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생부가 임의 인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생부에 대해서 재판상 인지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²⁴⁾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 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진다고 전제하면서도 생부가 법원에서 인지의 허가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이와 균형을 맞추려면 이러한 자에게도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우리 민법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²⁵⁾

이 규정은 독일민법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므로,²⁶⁾ 관

련된 독일민법 규정을 살펴본다(아래에서 독일민법 규정은 직역하지 않고 우리 민법체계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 독일민법 제159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의 출생 시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는 자의 부(父)로 추정된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1594조 제2항은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는 인지할 수 없다(자가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한, 그 자에 대한 인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에 따르면 모가 혼인중에 출산한 자는 일단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생부가 인지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인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독일민법 제1599조 제2항 제1문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가 이혼청구 계속 후에 출생하였고²⁷⁾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확정 후 1년 내에 제3자(생부)가 자를 인지하면²⁸⁾ 제1592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인지에 의해서 친생부인의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인지의 효력은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며,²⁹⁾ 친생추정의 효력도 역시 그 때 비로소 소멸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 출생한 자도 일단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³⁰⁾ 제3자가 이러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를 인지하는 결과가 된다(제3자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자를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판결 확정 후에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제3자가 인지를 하는

23) 윤진수,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가족법연구 제31권 1호(2017), 17면.

24)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뿐만 아니라,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도 생부가 임의로 인지할 수 없다. 다만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생부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가 가능하다.

25) 2015년 법무부 용역보고서(용역수행자: 전경근, 최성경, 홍윤선), 친생자추정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19면에 제안되어 있는 개정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이 개정안은 법무부 개정안 제855조의2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7조의2(생부에 의한 인지허가청구) ① 민법 제844조 제2항의 경우,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夫)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자가 출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844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844조 제2항의 기간(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 대해서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정은 우리 민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제1항 단서는 부(夫)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844조 제2항의 기간 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는데, 제1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자를 '혼외자'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6) 윤진수, 앞의 논문, 19면.

27) 이혼청구가 계속된 후 이혼판결 확정 전에 출생하여야 한다. BT-Drucks. 13/4899, S. 86.

28) 제3자가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전에 모의 남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한 통상적인 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의 동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3자가 자의 생부가 아닌 경우에도 모의 남편 및 모와 통모하여 허위의 인지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원의 개입 없이 모, 모의 남편, 생부가 사적인 합의에 의해서 자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독일학계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aul, Die Neuregelung des Abstammungsrechts durch das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FamRZ 1997, 1441/1448, 1454ff; Rauscher, Vaterschaft auf Grund Anerkennung, FPR 2002, 359/368; MüKoBGB/Wellenhofer BGB § 1599 Rn. 69.

29) 따라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시점에는 그 자는 모의 남편(또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민법 제1594조 제2항은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는 인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민법 제1599조 제2항 제2문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159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 모가 출산한 자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독일민법 제1592조 제1호와 제1594조 제2항에 따르면 인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1599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제3자가 그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제159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 생부가 임의로 인지할 수 있는 자는 혼인외의 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물론,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나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라고 해도 생부가 임의로 인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³⁰⁾ 법무부 개정안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갖는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생부는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를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 민법체제와 맞지 않는다.³²⁾ 독일민법에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출생한 자가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제3자(생부)에 의한 인지가 허용되는 이유는,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인지할 수 없다'는 독일민법 제1594조 제2항이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독일민법 제1599조 제2항 제2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³³⁾ 법무부 개정안과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려면, 우리 민법체계 내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해석론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입법기술에 있어서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법무부 개정안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생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위와 같은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부가 인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 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포태중인 자도 인지가 가능하지만(민법 제858조),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시·읍·면의장이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였다가(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출생신고 후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자가 출생하면 먼저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³⁴⁾ 이에 기초하여 인지의 기록

30)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남편이 자의 부(父)로 기록된다. Gaaz/Bornhofen, Personenstandsgesetz, S. 144.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단 전남편인 부(夫)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법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독일민법 제1599조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1599조와 같은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적한 출생신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1) 다만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나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자의 신분이 혼인외의 자로 변경되므로, 그 때 인지할 수 있다.

32) 승이도,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29권 제1호(2015), 288면에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夫의 자로 추정되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夫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生父가 그子を 인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전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3) BT-Drucks. 13/4899, S. 86; Gaul, Die Neuregelung des Abstammungsrechts durch das Kindschaftsrechtsreformgesetz, FamRZ 1997, 1441/1448: Für diesen Fall suspendiert § 1599 II S. 1 Hs. 2 BGB n. F. zugleich von § 1594 II BGB, nach welchem eine Vaterschaftsanerkennung nicht wirksam ist, “solange die Vaterschaft eines anderen Mannes besteht”, insbesondere also gemäß § 1592 Nr. 1 BGB n. F. dem Ehemann der Mutter zugerechnet wird.

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³⁵⁾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이렇게 되면 결국 인지신고에 의하여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현행법체계상 혼인외의 자에 대해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³⁷⁾ 위와 같은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인지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출생신고에 의해서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기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부도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어차피 생부의 입장에서는 인지허가의 심판을 받으나 친생부인허가의 심판을 받으나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사건의 성격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독일민법 제1599조 제2항은 생부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나,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생부가 인지를 하려는 경우 어차피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든, 인지의 허가를 받아 인지신고를 하든 생부의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를 바로 인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3) 법무부 개정안 제855조의2에 따르면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생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나 모의 전남편이 이미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³⁹⁾ 생부는 위 규정에 따른 인지를 할 수 없다.⁴⁰⁾ 생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모나 모의 전남편은 의사만 있으면 언제라도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결국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고, 모나 모의 전남편에게 출생신고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모나 모의 전남편의 의사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즉 모나 모의 전남편에게 자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져 있는 것

34)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장설, 국적회복, 귀화, 국적취득 등의 사유로 작성된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I), 357면.

35) 인지신고서에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I), 570면은 인지신고서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피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사람이므로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그의 성명과 본,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하고 부는 인지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6)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제55조 제3항은 “민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신고서에는 가정법원의 인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가 부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진수, 앞의 논문 22면.

37)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폭 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또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父)가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1호(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는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혼인외의 자의 경우에도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8) 법무부 개정안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생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거쳐 자를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9)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1항: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40) 자가 태어나면 우선 출생신고를 하고 그 후에 인지신고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일단 출생신고가 되면 인지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다.⁴¹⁾ 특히 모의 전남편에게 생부보다 우선하여 자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태어난 자에 대해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인정하고,⁴²⁾ 모나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생부가 인지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가정의 평화와 자의 복리를 지키려는 데 있다. 아내가 간통하여 자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 자를 양육하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생부는 자기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⁴³⁾ 즉 이러한 경우에는 자의 신분과 양육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의 남편이 생부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해소된 후에 자가 출생하였고, 생부에게 자를 인지하고 양육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가정의 평화는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자의 복리만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생부에게 자를 인지하고 양육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생부로 하여금 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실현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모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생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하는 길은 차단되는데, 이는 결국 모의 전남편에게 자의 신분 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에조차도 모의 전남편에게 자의 신분 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규정은 결국 자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이미 혼인이 해소된 후에 자가 태어났고 생부가 그 자를 양육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생부의 인지를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의 복리실현에 부합한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양육의 의사가 없는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면 생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인지를 하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자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자의 복리를 해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의 입장에서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게 되겠지만, 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인지는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 개정안 제855조의2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결과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만약 모 또는 부(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친생부인의 기회를 상실하면, 자는 생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 없고, 생부도 자를 인지할 수 없어,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길이 막혀 버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상태를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법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모나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생부는 더 이상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자의 입장에서도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⁴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결과를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3. 친생추정과 관련된 문제

(1) 법무부 개정안 제844조 제3항에 의하면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41) 예를 들어 생부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하여 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모나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지허가의 심판을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인지 허가의 심판이 확정된 후 아직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기 전에 모나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법원의 인지허가 심판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법무부 개정안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는 임의 인지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진수, 앞의 논문, 19면 참조.

42)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태어난 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 중에서도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탈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포탈하여 출산한 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

43) 모가 남편의 결정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

44) 물론 모나 모의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나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하고 2년의 제척기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생부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상실된다.

인지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모가 전남편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를 포태하여 출산한 경우에도(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지만(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갖는다), 친생부인의 허가(모나 모의 전남편) 또는 인지의 허가(생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확립된 법리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사실상 이혼 등 부부가 별거하여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를 포태하여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생부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⁴⁵⁾ 즉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생부가 자와 모의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이미 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도 일단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될 뿐 아니라, 모나 모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지 않으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생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력으로(모나 모의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주지 않으면) 인지나 출생신고를 하는 길이 봉쇄된다.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생부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보다 오히려 더 제한하는 입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한편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를 포태하여 출산한 시점이 혼인 중이라면, 위의 개정안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개정안은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한다.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를 포태하여 출산한 시점이 혼인 중인 경우에는 그 자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되는 반면, 동일한 상황에서 포태된 자라도 혼인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때에는 전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모나

모의 남편이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생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거쳐 인지를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모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면 생부는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별거로 모가 낳은 자가 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상황에서 출산의 시점이 혼인 중이나 혼인종료 후 300일 내이나에 따라 자의 신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생부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어차피 유전자검사를 통해서도 모의 전남편과 자 사이에 부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므로, 굳이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이유도 없다.

(2)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혼인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에 비추어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인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즉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자가 출생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추정의 주된 목적인 자의 복리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경우에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러한 경우 그 자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자를 출생시부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규정하는 것은 일단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는 친생추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현행법상 혼인중의 출생자는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그리고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그것이다. 법무부 개정안은 이러한 자(혼인해소 후 300일 내에 출생하였고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며, 생부가 인지하려는 자)를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규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

45) 대판 1983. 7. 12, 82므59 전원합의체. 모나 부(夫)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결과, 생부는 그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인 부(夫)의 친생자로 등록되는 경우 만약 모 또는 부(夫)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친생부인의 기회를 상실하면, 자는 생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 없고 생부도 자를 인지할 수 없어,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할 길이 막혀 버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모나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무부 개정안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한 개선입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모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부가 자를 양육하고 있는데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한다면, 법무부 개정안에 의할 경우 생부가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영구히 박탈될 수 있다(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생부는 자력으로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계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설령 모의 전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생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모는 일단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데, 이는 모와 생부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

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모나 모의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생부는 그 자를 인지할 수 없게 되고 자도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진실한 혈연관계에 기초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다. 셋째,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현행 친생추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비송절차사건으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점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첫째, 현행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 개정안 제854조의2는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모나 전남편은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된 후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일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재판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면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모는 그 자를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 제855조의2는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경우 생부는 법원에서 인지의 허가를 받아 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 민법에서 생부가 인지할 수 있는 자는 혼인외의 자로 엄격하게 국한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생부가 인지한다는 것은 현행법체계에 반한다. 나아가 개정안에 따르면 생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자가 출생하면 우선 출생신고를 하고, 그 후에 인지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출생신고가 되면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출생신고에 의해서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

고 여기에 인지의 기록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 어떻게 인지의 기록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인지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어 생부가 인지를 할 때까지 자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1개월의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둘째,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 개정안 제855조의2에 의하면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생부는 법원에서 인지의 허가를 받아 자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는 전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가지므로, 모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모나 모의 전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생부는 자를 인지할 수 없게 되고, 자도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혈연의 진실에 기초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면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모나 모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생부는 인지를 할 수 없게 되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재현된다. 셋째, 기존의 법리와 모순된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 개정안 제844조 제3항에 의하면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하여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모나 남편은 물론 생부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이러한 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모와 모의 전남편만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생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생부는 개정안 제855조의2에 따라 법원에서 인지의 허가를 받아 인지를 할 수 있으나, 모나 모의 전남편이 이미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부는 더 이상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기존의 법리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탈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생부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고 자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이러한 자도 일단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모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생부는 더 이상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모순에 빠진다. 또한 개정안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모가 남편의 자를 포탈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생시점이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이면 개정안의 규정이 적용되고(그 결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모나 전남편이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생부는 인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자 역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 출생시점이 혼인중이면 기존의 법리가 적용되는 모순이 생긴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되어 생부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거쳐 인지를 할 수 있고, 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장기간의 별거라는 동일한 사정에서 포탈되어 출생한 자가 출생시점에 따라서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인지의 기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모가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의 불합리성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혼인중에 포탈하여 출생한 자를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규정하고 친생부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와 자의 복리를 지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해소된 상황에서는 가정의 평화는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생부가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야 할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이러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은 생부가 자를 인지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필자의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부가 공감한다면, 법무부가 스스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비판을 계기로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심화되기를 기대한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2)

가정법률 전문상담의 특화와 가정법원 설치 주장

1960년 가정법률 전문상담을 특화, 가족법개정운동 주도

1963년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가사심판법 제정 입법 초안에 참여

1960년 1월 1일은 한국 여성의 법적 지위에 큰 획을 그은 날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15년 만에 한국인이 만든 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어 헌법에 규정한 남녀평등의 이념이 미흡하나마 당시로서는 상당부분 실현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여성의 법적지위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신민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또한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여성운동이 하나의 중요한 기점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여성운동의 핵심적 과제를 이루었던 민법상의 남녀평등 구현은 사회 지도층의 봉건적 사고로 인한 저항 탓

에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해 주기는 했다.

특히 민법 제정에서 남녀차별을 폐지하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태영 소장은 신민법의 제정을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여성의 법적지위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현실적 장치가 여성법률상담소였다면 그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은 명문화된 법률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더욱 원천적인 여성의 복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의 개정이 절실함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이러한 그의 집념은 이미 50년대 초반 민법 초안이 작성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1952년 7월 기초를 완료한 민법 초안이 여성의 지위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 소장은 그때부터 민법안 개정을 위한 범여성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 때 이 소장에게서 비롯된 상담소의 민법 개정운동은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흘러 호주제를 폐지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완전한 성평등, 부부평등을 향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민법 개정운동과 더불어 이 소장이 역점을 둔 것은 가사심판법 제정과 가정법원의 설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5월 소년법 개정에 관해 대법원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한 가정법원 설치요망 진정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등 사회적 요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태영 소장을 필두로 여성단체연합회가 가족법개정과 가정법원 설치

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한 것이 1962년 9월 3일이었다.

그런데 가족법개정은 당시 법조계의 의견이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추진을 뒤로 미루게 되었고 가정법원의 설치에는 약간의 진통 끝에 성사될 수 있었다. 당시 대법원의 요청으로 가정법원 설치 요강을 작성해 전달한 이태영 소장은 이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사심판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 가사심판법 초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가사심판법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31일 법률 제 1357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곧 이어 10일부터 가정법원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소장은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가정법원은 인간의 존엄, 남녀의 평등, 가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기관이 일단 제도로 정착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똑같은 이상을 지향하는 여성법률상담소와 2인 3각을 이뤄 서로 도와 가며 법을 통한 인권회복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된 것이다.

상담소는 이 소장에 이어 지금까지 경험 많은 상담위원들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가정법원 민원실의 출장상담 또한 이러한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이다.

편집부



교 육 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아이와 추억을 쌓는 치유의 시간을 통해 삶을 위해 전진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일 시 : 2017년 9월 15일(금) ~ 9월 16일(토)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44명

자녀 48명 (3개월~4세 이하 : 20명 / 5세~13세 이하 : 28명)

조은경, 박상진, 최정아, 천다라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태수 센터장 외 상담원 1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권 주거복지 마이홈센터)

이영옥, 홍경희 미술치료사 (트리인마인드연구소),

최희정, 천소희 무용동작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애란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50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본소에서는 비혼모 44 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있는 홈브릿지 캐빈호스트에서 숙박을 하며,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주거 및 법률관련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탁아 및 미술치료, 동작치료, 놀이치료 등의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과 상담 외에도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인 사파리 월드에 패스트트랙으로 입장하는 등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야간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프로그램 개관

A.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사 : 김태수 센터장(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권 주거복지 마이홈센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등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 이후 강사는 주택임대차 재계약상의 유의사항, 임대주택 신청자격 여부 등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다.

2.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가정폭력 등 비혼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다양한 상담사례를 들어 강의하였고, 관련하여 간단한 OX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록 유도하였다. 또 에버랜드 체험활동을 마친 야간에는 상담위원들이 비혼모들의 각 방을 방문하여 개별 및 집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B.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비혼모들의 교육시간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준비된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3. 「37개월~4세 아동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 강사 : 최희정 무용동작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천소희 보조강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강사와 보조교사들은 아동과 노래로 자기소개 및 인사, 몸놀이, 공놀이, 낙하산놀이, 마음놀이 등을 통해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불안이 높아 적응시간이 필요했지만 점차 반응하고 움직이며 수업에 집중하였고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래 간의 친밀감을 높였다. 협력하기와 지지하기를 배우며 집중력과 그룹 내 다른 아동을 서로 배려하는 연습을 하고 이러한 간접적 사회경험을 통해 양보와 배려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4. 「5~7세 아동을 위한 웃음놀이치료」

▷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아하교육컨설팅 대표)

강사와 보조교사들은 아동과 인사, 유아체조, 원만들기 놀이를 통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빠른 움직임과 멈춤 등의 동작을 통해 집중력, 통제력을 기르고, 풍선을 이용한 놀이 활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현하도록 하여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신나게 뛰어논 아이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또래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교류하여 주위를

배려하면서 적극성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5. 「8~9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 강사 : 홍경희 미술치료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클림트 생명의 나무 명화를 통한 나의 나무 에코백 완성하기를 진행하였는데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표현하고 선생님과 또래들에게도 작품을 소개하고 보여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소개하기에 머뭇거리거나 낮은 환경과 친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예술매체를 활용한 표현에는 흥미를 갖고 적극적이고 집중력있게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에 만족해하였다. 완성된 작품을 착용한 뒤 사진 찍기에도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다.

6. 「10~13세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 강사 : 이영옥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에코가방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나 무늬, 그림으로 가방 꾸미고, 서로 잘 어우러져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색을 면봉으로 아크릴 물감을 찍어 확장시켜나가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한 경험, 다양한 그룹의 색 작업을 보며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과 기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은 각자 자신이 느끼는 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가방에 표현하여 완성하였는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혼자 꾸미기 해나가는 아동도 있고, 친구와 경쟁하듯 지지 않으려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동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쉽게 포기하려는 아동, 다양한 색의 물감에 반응하여 작업보다는 물감의 새로운 색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아동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업에 대한 아동들의 집중도와 완성도가 높았으며 아동들은 새롭게 경험하는 미술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7. 「용인 에버랜드 체험」

에버랜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파리월드' 외 다양한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점심식사 후 해산 하였다.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든든했습니다.

□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이나 바라는 점

-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교육연계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자격의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완화 했으면 합니다.
- 주거복지 혜택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 양육비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 참가자들의 한 줄 소감

- 각 방에 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해주어 좋았습니다.
-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지식을 OX 퀴즈로 풀어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퀴즈 정답을 맞춰 받은 상품권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 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동이 힘든데,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모로 도와줘서 감사했습니다.
- 아이와 둘이 여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데, 차량과 숙소까지 제공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아이가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 행복한 추억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 힐링도 하고 법률교육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아이 양육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잘 몰랐던 임대주택 신청 방법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 정리

강의가 끝난 후 진행되었던 상담 및 설문조사, 후기 등을 통해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비혼모 가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비혼모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 가정, 양육을 병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캠프만으로 비혼모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비혼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며 육아와 일에 치인 이들에게 꿈같은 1박2일 가족여행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던 모습과 귀가버스에 탑승할 때 아쉬워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고, 더 많은 비혼모가정이 다음 번 캠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은경 상담위원

참·가·소·감·문

김OO, 30대

“엄마, 우리 정말 자고 가는 거야? 하루종일 함께 하는 거지? 나 너 무너무 좋아서 행복해” 오늘 아침 7시부터 들떠서 용인에버랜드에 도착한 9살 딸아이의 찜찜한 목소리가 너무도 신나 보입니다. 아이는 학교생활 하느라 엄마는 직장생활 하느라 야외에서 1박을 하는 일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일입니다. 워킹맘들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아이에게도, 회사일에도 소홀할 수 없기에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일은 꿈도 못 꾸는게 사실이니까요. 오늘이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푹푹푹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아이는 평소에도 못다 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같이 있는 오빠들도 전염되어 종알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주거복지 교육과 가정법률교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새로 바뀐 가족법 내용을 퀴즈를 통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움도 있고 행복도 느끼는 좋은 추억을 만든 이번 가을 캠프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했던 선물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의 추억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빈나엄마, 10대

전날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설레발치다 잠들고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버스에 올랐다. 에버랜드에 도착해 단체사진을 찍고 대강당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기분이 들고 노는 시간이 줄어들어 안타까웠다. 급하게 10 분 정도 젖을 물리고 바로 사파리를 구경하러 갔다. 이동하는 동안 퍼레이드도 봤는데 이제야 내가 진짜 놀러왔구나 하고 실감이 났다. 지급받은 상품권으로 햄버거도 사먹고 기념품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다보니 시간이 흘러 어두워졌다. 숙소로 돌아와 애기랑 씻고 잘 준비를 하고 간식으로 받은 치킨을 먹으며 친구들과 수도도 떨어뜨렸다. 빈나랑 언제 또 이런 곳에 와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만들까 라는 생각에 아쉽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자주 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다 문득 우리나라가 이런 시설도 있고 살기 좋은 나라구나 선생님들 봉사자들 우리와 애기들을 돌봐주고 고생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은 지금 이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웠다.

이OO, 20대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칠 만큼 마음이 설레던 캠프였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이번 캠프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숙제도 집안일도 바쁘게 마무리 짓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 내내 도착시간을 확인 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반겨주시는 선생님

들을 또 만나니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오랜 가족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정법률교육 시간 때 퀴즈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살면서 필요한 법률에 관해 알려주어 고마운 마음 이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청구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아 포기하는 심정 이었는데 야간에 방으로 방문해 주신 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께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꽃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 놀이기구를 타며 심장이 쫓깃해졌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도 훅 날려보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OO, 20대

이번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공부를 퀴즈로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삶에 여유가 없어 저의 표정은 늘 어둡고 화만 내는데 아이들과 밥걱정 돈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예쁜 풍경과 아이들의 미소를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세심하게 상담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상담소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추억과 삶의 지혜를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OO, 20대

에버랜드를 딸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와 편하게 외식을 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놀이기구를 기다리며 지루했지만 신나게 놀고 싶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정법률교육 시간에 처음에는 OX 퀴즈를 풀어 상품권을 타야지 하고 욕심냈지만 관심 가는 주제들이라 틀리고 나서도 열심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혼모여서 창피한 마음에 상담을 못했는데 늦은 시간에도 방문해서 상담해 주신 상담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도 만들고 유익한 교육도 듣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장OO, 40대

국민임대에 입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모집공고라는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양육비관련 소송에 대해 여러 가지가 궁금했는데 늦은 시간에 방을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1박2일간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게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 폭력 상담실

행위자 상담



자녀에 대한 폭력, 부모 및 부부상담 등 가족상담으로 다각적인 변화 모색해

사건번호 2016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부모집단상담 1회,
행위자의 배우자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부부집단상담 1회,
부모집단상담 1회
부부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5회,
부모집단상담 6회,
피해자(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등
총 30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1. 24. ~ 2017. 6. 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배우자와 결혼한 지 4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40대, 30대)이 있다. 본 건 피해자인 딸은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

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성장기에 정상적인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대학졸업 후 단기간 직장을 다닌 것을 끝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생활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는 유년시절부터 행위자의 폭행이 지속된 데 대한 불만으로 부녀간 갈등이 심화되어 오던 중 2016년 5월 사건당일, 사소한 일로 다툼이 되어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법원에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행위자의 배우자까지 상담을 받도록 가족상담 처분을 내렸다.

행위자 가족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행위자와 배우자간 부부갈등도 심각하였다. 이에 부부가 함께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부부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부부집단상담 초기에 행위자는 자신이 연장자이고 부부폭력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 동기가 약하였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으나 마지막 회기까지(8회기) 성실하게 참여하고 집단 역동에 좋은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양육태도와 아내의 자율적인 양육태도 간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자녀에 대해 기대한 점이 이루어지지 않

있을 때 대처방법이 달랐고, 자녀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각자 받아들이는 것이 다름을 인식하였다. 아내는 자녀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부부가 더 가깝게 지내고 부부관계에 집중하고 싶어 하였지만, 행위자는 자녀문제가 해결되어야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여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아내는 집단상담 참석 후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행위자의 문제는 극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딸에게는 안쓰럽고 답답하고 죄책감도 든다고 하면서 관심사는 딸의 문제라고 하였다.

딸은 행위자와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어머니와도 거의 대화 없이 지냈다.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어서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나 인생 목표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존재의 의미 내지 인생 계획에 대하여 한 단계 성숙한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랐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행위자와 아내는 부부집단상담 종결 후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였으며 상담 종결시점에는 딸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딸의 현재 모습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내가 자신과 딸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등 의식의 한계를 나타냈다. 행위자가 아내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상담 종결 후에도 아내는 부모집단상담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사건번호 2016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교육강좌 3회,
부부 부부상담 6회, 교육강좌 1회 등
총 12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1. 28. ~ 2017. 6. 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2세)이 있다. 2016년 8월 사건 당일, 부부가 함께 한 외출 중 건성으로 대답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위자는 집으로 돌아와 그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뺨을 때린 데 대응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 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행위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밤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목인하였고, 이 기간 중 두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폭력도 재발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분노조절 장애를 폭력발생의 이유로 꼽았다.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집에 오면 피해자를 괴롭히기만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 행위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성격과 고집이 강한 것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자신은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피해자의 양육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결정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였다. 부부 모두 자신의 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상대방의 태도와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부부는 행위자의 생업 때문에 야간 집단상담이나 부부캠프 등에는 참석이 어려워 주간에 개별상담과 부부상담 및 교육강좌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였다. 부부는 서로에게 폭언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비언어 감정표현에 대하여 인식하고 비폭력대화법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언 및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다. 종결상담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대화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2***/2016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교육강좌 3회, 부부집단상담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자조모임 2회,
부부	부부상담 3회, 교육강좌 2회, 부부집단상담 7회, 부부캠프 1회,
자녀	미술프로그램 5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1. 29. ~ 2017. 6. 9.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8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8세, 5세) 이 있다. 결혼 후 1년에 1번 정도 남편의 폭력행사로 갈등이 내재되어있던 부부는 2016년 9월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남편이 흥분하여 아내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고, 폭행사실에 대하여 따져 묻던 아내가 남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부부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내며 양육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아내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점은 인정하

지만 남편의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특히 남편이 자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꼬투리를 잡는 경향이 있어 화가 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남편은 아내가 과민하다고만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부부는 2년 전 자발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3~4개월의 상담을 받고 잠시 관계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의 상황이 재현되고 폭행이 재발하였다고 하였다.

부부 쌍방은 대화방식과 현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였다. 상담 중에도 한 차례 큰 싸움이 발생하였고 남편은 이혼의사가 없었지만 아내의 제안으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사건이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기록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부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고 자녀와 동행하여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보였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 비난 및 공격을 자제하고 양육방식에 대하여 의견 나누기를 실천하기로 약속하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었다. 상담종결 시 아내는 이혼의사는 접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였고, 남편은 아내의 주문을 수용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9회, 부모집단상담 12회
피해자(아들)	전화상담 2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2. 21. ~ 2017. 6. 2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들)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배우자와 결혼한 지 3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모두 20대)이 있다. 2016년 9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온 택배물건을 동생이 개봉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드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후 칼을 들고 위협하는 특수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보호관찰과 함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아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또한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2개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집을 나와 부모님의 집에서 지내며 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직업은 있었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므로 처분을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배우자와 피해자의 상담은 원하지 않았고, 상담을 받는 동안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였고 실제로 정해진 상담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집단상담에서는 매우 역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행위자 자신의 문제 해결에는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서 자신 가정의 문제를 부부문제라고 정리하였다. 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배우자가 자녀들 앞에서 행위자를 비난하여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행위자를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과거사를 반복거론하면서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위자는 부부관계 유지에 회의적이었다. 행위자는 상담 종결 후 배우자와 피해자를 만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이혼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행위자는 매우 성실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였는데, 집단상담에서 다양한 가정폭력 사례를 접하면서 부모 입장뿐 아니라 종교인으로서도 반성을 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별거하는 현재 상태가 마음 편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

의 훈계를 들은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은 행위자의 화풀이 대상에 불과하였다고 하면서 행위자의 변화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파탄에 이른 가족관계를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상담에 참여하였고, 부모집단상담을 통하여 아버지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였으나, 피해자 및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상담을 통하여 행위자 자신 및 배우자, 자녀 등 각 가족구성원들의 입장이나 성격, 갈등원인 등을 정리해볼 기회를 가진 것은 유의미하였고, 이 점이 이후 가족관계 설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쉬 · 어 · 가 · 기



시험기간에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

1. 한숨 자고 싶은가? 10. 좀 쉬는가?
2. TV 잠깐 들어놓으려 하는가? 11. 컴퓨터 좀 할까?
3. 책상 정리하려고 하는가? 12. ~~아무것도~~ 끝났다 공부할까?
4. 웹툰 몇 화만 보고 할까?
5. 여차피 방생 건데 천천히 할까?
6. 폰 조금만 할까?
7. 절각에 시작 할까?
8. 지금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할까?
9. 뭐 좀 먹고 할까?

▲ 2017년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중학교 2학년생의 결심

인터넷상담



저희 아이는 2009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미국의 출생연월일을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정해지는 날짜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한국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과 미국 여권 및 출생증명서 상의 생년월일이 달라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아이의 한국주민등록번호를 미국 출생연월일로 고칠 수는 없을까요?

A 2010. 5. 1.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그 일자를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국 ○시 ○동 ○번지에서 출생(현지시각 2002년 1월 10일 10시), 2002년 1월 30일 부 신고(같은 국 주재 한국대사 송부)”와 같이 그 현지시각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2010. 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에 복수국적자의 경우 두 나라 서류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달라 불편을 겪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0. 5. 1.부터 시행된 현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기록방식을 기존의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던 방식에서 현지 출생연월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국 출생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예규는, 가족

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개정 예규는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이 개정 예규 시행 이전에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출생연월일을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개정 예규에 따라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을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나이들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마거릿 크룩생크 지음
이경미 옮김
동녘 2016

고령화 사회의 뒷 같은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얼마 전 백세를 앞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구순을 넘긴 시어머니는 자리보전을 하고 계시고 팔순을 바라보는 부모님 댁 식탁은 병원 순례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어릴 때에는 부처가 말한 인간의 네 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가운데 '로' 즉 늙음이 왜 '사고(四苦)' 짝이나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리고 바로 내가 늙어가면서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생각컨대 노년이란 막연하게 뭉뚱그릴 수 있는 층위가 아니라,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처럼 좀 더 세심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활기찬 노년, 건강한 노년을 부르짖는 대중매체의 갖가지 정보가 넘쳐나고,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이 인생의 승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는 여간 피곤하지 않다. 이 책 「나이들을 배우다」에서는 이른바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미국에서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하고 있다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화는 차용할 가치가 없는 미국식 개념'이다. 늙음에 대한 문화적 통념과 문제 그리고 노인 인구 문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공포, 노인들의 약물과잉 문제 - 미국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정치적 문제로써의 건강한 노화, 연령차별주

의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항문화로서의 노년학과 페미니스트 노년학 및 여성의 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은퇴 후 25,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는데, 이런 인구학적 변화를 인생말년에 어울릴만한 가치들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신 노동과 생산성이라는 중년의 가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아울러 조깅과 테니스를 즐기는 80세 여성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감탄에는 지배적인 문화가치가 묻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에 대해 저자가 말하는 대항문화적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쇠락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화가 명예로움에서 추락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 마거릿 크룩생크는 메인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노화연구센터의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잘 늙어가겠다는 것도 어쩌면 하릴없는 욕망이 아닐까, 사람은 어디까지 존엄한가에 대해 그래도 계속 묻게 된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176)



모나리자 스마일

감독 마이크 뉴웰

출연 줄리아 로버츠, 커스틴 던스트, 줄리아 스타일스,

메기 질렌할, 지니퍼 굿윈



1953년 가을, 미국 뉴잉글랜드의 명문 대학 웰슬리의 신학기가 시작된다. 캘리포니아의 UCLA 출신인 캐서린 왓슨(줄리아 로버츠)은 이번부터 웰슬리에서 미술사를 가르칠 예정이다. 부푼 기대감도 잠시, 대단히 똑똑하지만 그만큼 전통과 보수의 가치에 젖은 학생들의 태도에 실망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파격적인 강의를 이어가는 캐서린에게 학생들은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성공적인 결혼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베티(커스틴 던스트), 남몰래 변호사의 꿈을 꾸는 조앤(줄리아 스타일스), 자유연애의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지젤(메기 질렌할), 재능 많고 똑똑하지만 친구들만큼 예쁘지 않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는 코니(지니퍼 굿윈)가 각자 선택하게 되는 길은 처음과 많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 캐서린 자신이 가장 크게 변한다.

2003년 <모나리자 스마일>의 개봉 당시 ‘<죽은 시인의 사회> 여성 버전’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했다. 보수적인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꿈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자유분방한 선생,이라는 구도는 일견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모나리자 스마일>에는 좀더 복잡한 레이어가 덧씌워져있다. 성별의 차이, 미묘한 시공간의 선택이 그것이다.

1953년의 미국은 극심한 변화와 변화 사이에 속한, 그야말로 태풍 직전의 고요 같은 상태였다. 1945년에 종결되기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국은 ‘의도치 않은’ 여권신장의 전장이기도 했다. 남성들이 전쟁터로 떠난 사이, 그전까지 주부의 역할에만 만족했던 여성들이 대거 사회로 진출하여 원래 남성들이 차지했던 직업군을 경험했다. 육체노동부터 아주 정교한 정신노동까지 전담하게 된 여성들은 새로운 세계를 맛보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남성들이 돌아오자 여성들은 갑자기 과거로 밀려났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집을 떠난 사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부재에 크게 개의치 않은 채 일하고 섹스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며 크게 분노했다. 이미 가정 바깥을 경험하고 독립이 무엇인지 깨달은 여성들에게 다시금 ‘가정의 천사’ 역할에만

만족하라고 강요함으로써,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압적인 보수의 의무를 여성들에게 지웠다. 하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미증유의 ‘혁명’을 겪게 된다.

〈모나리자 스마일〉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시기에 속해 있었다. 기실 지금의 웰슬리 대학교는 힐러리 클린턴(1947년 생)과 매들린 올브라이트(1937년 생) 등 미국의 걸출한 여성 정치인을 배출한 명문으로 손꼽힌다. 웰슬리에서 ‘뛰어난 가정주부’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리더’가 출현하기 직전의 시기, 영화 속 캐서린은 바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행복할 주부 이외의 삶도 가능하다고 강변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이 주문한 “카르페 디엠”보다 더 파격적이고,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제안이었다.

조앤은 여성을 다섯 명밖에 뽑지 않는 예일 법대 대학원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포기한다. 이유를 묻는 캐서린에게, 조앤의 약혼자는 밝게 웃으며 “5시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엔 그 학교가 너무 멀잖아요?”라고 대꾸한다. 안타까워하는 캐서린을 향해 조앤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가정주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야말로 편견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조앤을 비롯한 〈모나리자 스마일〉의 주인공들은 겨우 스무 살을 넘겼을 뿐이다. 이들의 미래는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서둘러 결정되어버린 것이다. 조앤의 에피소드는 2017년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결혼이 학교와 직장을 포기하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다.

연애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소녀들의 달콤한 속삭임 너머로, 미국 동부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차분하게 포착하는 카메라의 움직임 너머로, 반 고흐와 잭슨 폴락의 강렬한 그림 너머로, 익숙한 안정과 두려운 변화 사이에 간혀버린 이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펼쳐진다. 극중 베티의 대사처럼, 다 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미소는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상징처럼 비춰진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상·담·소·소·식



**본소, 상담소 홍보,
이혼 전 상담교육 동영상 새로 제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혼 전 상담 교육 동영상

「이혼, 어떻게 할까요?」 제작·보급

상담소 홍보 영화도 수정 보완하여 새로 제작



본소는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삼성의 이웃사랑 성금)을 받아 이혼을 앞두거나 이혼을 고려중인 사람들에게 이혼의 결정에 앞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이혼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혼 전 상담 교육 동영상

「이혼, 어떻게 할까요?」를 제작하였다.

본소는 200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혼 전 상담 교육 동영상 『현명한 선택-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를 제작하였고, 2017년 「이혼, 어떻게 할까요?」에서는 그동안 달라진 이혼관련 법과 제도, 이혼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바 있다.

상담소에서는 현재 이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라는 이혼 전 상담 교육 프로

그램을 상설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단계와 심화 단계로 진행되며, 이 동영상은 특히 기초단계에서 상담소의 전문상담위원의 상담과 함께 제공된다. 영상 시청을 통하여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기 전 현재 가족이 처한 현실과 이혼 후 처할 미래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다면적으로 숙고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제작 사업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조은경 상담위원이 주관하였다. 영상의 상영시간은 27분 42초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했던 상담소 홍보 영화를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기존의 영화가 상담통계 등 상담소의 변화 발전을 제대로 소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담소 창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상담통계, 소송구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출판 홍보 등 상담소 사업의 각 영역에 대해 소개하고 상담소의 사회적, 역사적 의의에 대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상담소 60년을 담은 이 홍보영화는 상영시간 24분 17초이며, 앞으로도 본소는 상담소 홍보 영화 및 각종 영상 작업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본소 교육부,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

9월9일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9월14일 LH 주거복지컨퍼런스에 참여

본소에서는 9월 9일(토), 14일(목)에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9일(토)에는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였고, 가정 문제의 예방과 인식개선 및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특히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라는 주제로 한 에코백에 그림그리기 체험행사는 남녀노소 모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꼭 알아야 하는 가족관련 법 이야기, 법률구조가 무엇인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9월 14일(목)에는 삼성동 COEX 컨벤션홀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방문하는 시민들과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파산·개인회생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및 본소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리고 관련 책자 배부와 설명을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족법개정서명을 받았다. 또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언제든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 하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려운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고, 상담소에서 무료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출장법교육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17명명과 자원봉사자 35명, 그리고 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법개정 서명(600명)과 법교육(100명), 법률상담(8건)을 받았다.(관련사진 2면)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

직원들의 문화적 충전 및 상담자로서

인문학적 소양 기르도록

9월 22일 본소 강당에서 ‘이정식 사장 초청 민족 수난사와 함께 한 우리 가곡’이란 주제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재교육이 있었다. 이정식 사장은 서울대 사범대 졸업이후 언론사 기자를 거쳐 (前) CBS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주)서울문화사 사장으로 저서에는 가곡에세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가곡의 탄생>, <시베리아 문학기행>등이 있다. 강사는 일제의 핍박 하에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봉선화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여 김소월, 정지용, 박목월 등의 시인과 가곡에 얹힌 이야기, ‘조선의 노래’, ‘고향’, ‘망향’, ‘고향의 노래’, ‘이별의 노래’, ‘떠나는 배’, ‘동심초’, ‘아, 목동아’ 등 가곡에 얹힌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감상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사가 3곡의 가곡을 강단에서 직접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본 교육에는 객배희 소장 등을 비롯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관련사진 2면)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9월 28일에는 “마음의 상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김병후 원장은 특히 가장 강한 애착의 대상인 배우자와 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느끼는 주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다음 강의는 오는 10월 26일 (목)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를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9.9.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4
: 서대문복지박람회 - 북미영 상담위원 등
- 9.14.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5
: 서대문복지박람회 - 조은경 상담위원 등
- 9.19. 포항시민을 위한 가족법 강의
- 북미영 상담위원
- 9.20. 학교폭력예방교육18 - 강서공업고등학교
: 가정폭력예방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북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장민수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1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30주년 기념행사에 객배회 소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6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고, 22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위촉식에 참석하였다.

객배회 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30주년 행사 참석

본소 객배회 소장은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으며, 19일에는 본소에서 진행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리걸클리닉Ⅱ」에서 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법률구조 역사에 대해 강의 했다.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정숙, 권지연,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서암, 김영주, 김진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오윤정, 윤원섭, 이혜민, 전현정, 정영주, 홍수아,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미옥, 김소이, 심미숙, 임주용,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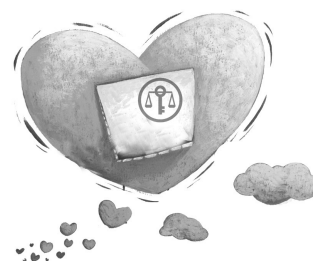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동완, 남서연, 맹현규, 손지희, 이민주, 박선정, 정혜진, 정하영, 이자경, 박윤원, 박윤정, 이지원, 전해선, 백다슬, 주현정, 조혜지, 강수지, 김혜림, 배준모, 이윤복, 최민서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8회, 의정부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 2회를 실시하였다. 9월 16일~17일 성평등기금으로 장애자녀를 둔 부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캠프를 실시하였다. 이정숙,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12회, 광주지법원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역 야탑초등학교, 분당초등학교 4학년 313명 대상으로 폭력예방순회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10회 배포하였다. 문대근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정수경, 한승일, 임재훈, 공영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8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정혜, 김진영, 김현명, 김현수, 박지현, 양승철, 오도환, 임용호, 최지희, 한두환, 한승일,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가사조정 2회,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9월 25일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 상담위원회 2017 3분기 간담회를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익산지부

9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6일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여성과 심리전문가가 함께 떠나는 힐링시네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7일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9월 4일 전주지방법원 장인혜 판사 외 실무관 4명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가정폭력상담 등의 현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3회, 협의이혼상담을 1회 실시하였다. 1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법률교육 및 무료소송구조를 안내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이진, 김한빛, 조근원, 진현덕, 임영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9월 21일 개소 25주년기념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차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포항지부

9월 19일 포항시민, 상담기관종사자,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본부의 복미영 상담위원을 초빙하여 무료생활법률강좌 '가족법Q&A'를 실시하였다.



2017년 8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8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469건으로 본부가 7,441건, 지부가 6,028건이었다.

본부는 6,980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288건·소장 등 서류작성 138건·소송구조 35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010건·화해조정 933건·소장 등 서류작성 19건·소송구조 66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98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7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16.9%→17.4%), 사실혼해소(0.7%→0.9%), 위자료·재산분할(7.9%→8.3%), 인지(0.9%→1.1%), 친생부인(0.8%→1.0%), 친생자존부(1.7%→1.9%), 혼인무효·취소(0.6%→0.7%), 부양(0.9%→1.1%), 친양자(0.5%→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4%→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1%→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98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15건(17.4%), 전화상담 5,582건(80.0%), 통신 및 인터넷상담 182건(2.6%),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9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5,946			
법률상담 (5,495)			
면접	전화	통신	지상
958	4,137	399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41	80	30	

* 2017/9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8,609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441	1,215	5,582	182		지상 1	6,980	288	138	35
강릉 (033) 652-9555	192	175	12				187			5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51	57	127				184	65		2
군산 (063) 442-1560	120	54	19				73	47		
대구 (053) 745-4501	592	102		10		출장 43	155	435		2
대전 (042) 520-5258	238	30	207				237		1	
동해 (033) 535-0188	127	67	58				125			2
목포 (061) 273-2514	180		179				179	1		
부천 (032) 667-2314	335	92	192				284	51		
성남 (031) 707-6661	346	180	103	1		출장 26	310	27	4	5
수원 (031) 243-4600	498	141	165	3		출장 48	357	138		3
순천 (061) 753-9910	164	40	113				153	6		5
충구 (02)2238-6554	240	162	78				240			
안동 (054) 856-4200	83	17	53	2			72	11		
울산 (052) 246-9568	144	33	110				143		1	
익산 (063) 851-5113	331	73	231			출장 16	320		6	5
인천 (032) 865-1120	389	190	173				363	5	1	20
전주 (063) 244-2930	197	110	65	12	1		188	8		1
정읍 (063) 535-3705	128	74	44				118	10		
진주 (055) 746-7975	166	44	73				117	44		5
정원·마산 (055) 261-0280	238	128	73	3			204	30	1	3
청주 (043) 257-0088	191	75	75	1			151	38	2	
춘천 (033) 257-4688	504	38	35			출장 430	503	1		
태백 (033) 554-4004	71	29	24			출장 18	71			
평택·안성 (031) 611-4251	141	82	25			출장 16	123	16	2	
제천 (043) 644-5690	86	27	51				78		1	7
포항 (054) 283-7555	76	21	54				75			1
지부총상담	6,028	2,041	2,339	32	1	출장 597	5,010	933	19	66
총 상담	13,469	3,256	7,921	214	1	출장 597 지상 1	11,990	1,221	157	101

** 2017/8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4,439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해 과거양육비 등 조정

법률구조 2016-186

담당 : 권영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원고(여, 38세)와 피고(남, 40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2007년 11월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피고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양육비 요청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재 원고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불규칙한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피고는 본인 명의의 커피숍을 운영하며 고가의 수족관을 보유하는 취미까지 누리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의정부지방법원 2017.8.10.)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총 4,200만원을, 2018.1.1.부터 2024.1.1까지 매년 1.1.에 7회에 걸쳐 6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지급기일을 2회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와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면접교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사건본인에 대한 심리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사건본인과 피고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으며, 원고와 피고는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되, [별지] '면접교섭에 대한 안내'의 주의사항을 고려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보증실패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60대 남성의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6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남, 65세)은 1998년경부터 한 주식회사의 명의상 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회사의 실제 대표인 신청인의 동서는 신청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신청인은 재력이 있는 동서를 믿고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의 사업은 예상외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2013년경에는 동서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워져 신청인에게 채무가 남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고령과 당뇨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7.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감치결정

법률구조 2017-45

담당 : 김병철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여, 43세)은 2005년경 피신청인(남, 43세)과 혼인 후 슬하에 사건본인(11세)을 두었지만, 피신청인의 심각한 주벽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8년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특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신청인은 이후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월 3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2015년경 본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이행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감치결정 (청주지방법원 2017. 7. 19.)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 15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 경찰서로 정한다.

알코올 중독자이며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54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62세)는 2003년 7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1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며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종종 낯선 사람들을 집에 들여 같이 술을 마시는데, 만취한 피고의 친구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건본인의 방을 두드리며 위협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술을 마시고 망치를 꺼내 원고를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피고는 의처증이 심하여 원고의 직장 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 원고가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다. 피고는 당뇨병에 걸린 원고가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의심하여 원고에게 밖에 나간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화장하는 것까지도 외도라고 의심하며 원고를 괴롭혔다. 2016년 7월 경 피고는 사건본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는 술을 마시다 사건본인에게 원고의 행방을 물어보며 사건본인을 밀치고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 다행히 사건본인이 술에 취해 둔해진 피고를 밀치고 도망치긴 했지만, 사건본인의 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7.4.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결정 확정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7년 10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10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7년 2월~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등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캐서린 한 대표, 한승희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0월 12일(목)	사춘기 자녀가 “싫어”라고 말할 때
11월 9일(목)	자기강요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12월 14일(목)	축하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1주년 기념 심포지엄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6년 9월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가정위탁 관련법 개정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오다가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법과 정책이 좀 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계기로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 문제를 비롯하여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제반 입법과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좌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발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유주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필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